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 ■ 공급대상

1.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① 임신 : 임신진단서 제출, ② 입양 :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거주지역 ▶ ② 배점기준표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자 연령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배점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동일 점수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